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제정 2009. 7. 8 조례 제1042호
개정 2010. 12. 17 조례 제111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6. 5. 27 조례 제157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와 명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에 두며, 명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로 한다. <개정 2010. 12. 17, 2016. 5. 27>

제3조(구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기준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질검사의 범위) ① 상수도과 관련된 수질시험업무와 병행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대상 및 범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수 및 정수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먹는물·샘물·먹는샘물·먹는물 공동시설
 3. 「지하수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지하수(음용수·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4.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24조에 해당하는 수영장의 욕수
 6. 「수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제5조(수질검사의뢰) ①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의뢰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소요량, 그리고 수수료를 수질검사 의뢰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수질검사 신청서 대신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 접수일자와 그 처리기간이 명시된 수질검사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별표 1에서 규정된 시료를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수하여야 하는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①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의뢰인이 해당 지역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봉인·봉합하게 한 후 의뢰인이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봉합을 실시하지 않고 의뢰인이 채수하여 검사의뢰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방문 채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에서 채수한 경우
2. 검사기구를 운반하여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7조(수질검사 의뢰의 불응) 소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질검사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합이 필요함에도 봉인·봉합이 없거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2. 의뢰인이 제출한 시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필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된 채수 용기가 아닐 때
3. 시료 채수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수일부터 보관기일이 경과되어

시료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는 수질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반환) ① 제5조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는 경우 출장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1. 수질검사 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른다.
2. 출장여비 : 「용인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다.
3. 납입고지서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소장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할 때에는 「용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르고,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 함은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③ 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거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내지역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2.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을 경우
3. 기타 공익 목적상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서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수질검사 성적서 대신 공문서에 의하여 갈음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 성적서는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성명 등 오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수질검사 성적서는 의뢰인이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④ 수질검사 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표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는 검사 목적이 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 할 수 없다.

제11조(검사성적서의 회수) ① 소장은 의뢰인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 검사한 시료명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가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11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를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을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를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⑨ 생략

부칙 <2016. 5. 27 조례 제157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각각 “상수도사업소”로 한다.

⑦ 생략

[별표 1]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

검사종별		처리기간	시료 소요량	비 고
먹 는 물		20일	4ℓ 이상	
먹는물공동시설		20일	4ℓ 이상	
샘 물		20일	○ 세균학적 검사 : 4ℓ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ℓ 이상	
먹 는 샘 물				
지하수	음 용 수	20일	4ℓ 이상	
	생활용수	15일	4ℓ 이상	
	공업용수 농업용수	15일	4ℓ 이상	
목욕장	원 수	10일	2ℓ 이상	
	욕조수	10일	2ℓ 이상	
수영조	욕 수	10일	2ℓ 이상	
급수 설비	저수조	10일	2ℓ 이상	
	옥 내 급수관	10일	2ℓ 이상	
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3. 여시니아균 항목 수질검사시 별도로 2ℓ의 시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4.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근무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12. 17>

<input type="checkbox"/> 수질검사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10일, 15일, 20일
의뢰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주 소		
	대 리 인	소속	이름
시료내역	시료종류	<input type="checkbox"/> 수돗물 <input type="checkbox"/> 먹는샘물 <input type="checkbox"/> 샘물 <input type="checkbox"/>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input type="checkbox"/>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input type="checkbox"/> 수영장의 욕수 <input type="checkbox"/>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 <input type="checkbox"/>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 <input type="checkbox"/> 상수원수, 상수(정수기), 지하수(정수기), 전용상수도 <input type="checkbox"/> 기타()	
	채수장소	채수일시	년 월 일(:)
	검사목적	지하수 정기검사, 지하수 준공용, 식품위생법상 정기검사, 학교 정기검사 인허가용, 참고용, 정기검사(저수조, 정체수), 기타 ()	
	검사항목	채수방법	지 참 시 료 () 검사자현장채취 ()
	입회공무원	소속	직급
재교부 신청사항	성적서 번호		성적서 발급일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합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제5조,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날인)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 하			
불 입 : 시료()			수 수 료

수질검사 접수증		접수번호	
		처리기간	10일, 15일, 20일
의뢰인(성명)		수수료	납부확인필
시료종류	<input type="checkbox"/> 수돗물 <input type="checkbox"/> 먹는샘물 <input type="checkbox"/> 샘물 <input type="checkbox"/>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input type="checkbox"/>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input type="checkbox"/> 수영장의 욕수 <input type="checkbox"/>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 <input type="checkbox"/>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 <input type="checkbox"/> 상수원수, 상수(정수기), 지하수(정수기), 전용상수도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인) 년 월 일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용인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납입고지서				
서기 년 월 일				
재정 과목	용인시금고 예금			
제 호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임자	
(관)상수도 사업수익	(항)영업수익	(세항)기타영업 수익	(목)수수료 수입	
일금				계
주소:				
적요: 수질검사수수료 상기 금액을 납입합니다.				
납부자:				
년 월 일				
용인시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원				
				출납자

영수필통지서			
(상수도사업소 보관용)			
제 호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상수도 사업수익	(항)영업수익	(세항)기타영업 수익	(목)수수료 수입
일금			
주소:			
적요: 수질검사수수료 상기 금액을 납입합니다.			
납부자:			
년 월 일			
용인시금고 용인시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납입자	정수관	수입금 출납원	취급자 기장

영수필통지서			
(정수과보관용)			
제 호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상수도 사업수익	(항)영업수익	(세항)기타영업 수익	(목)수수료 수입
일금			
주소:			
적요: 수질검사수수료 상기 금액을 납입합니다.			
납부자:			
년 월 일			
용인시금고 용인시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납입자	정수관	수입금 출납원	취급자 기장

영 수 증			
제 호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상수도 사업수익	(항)영업수익	(세항)기타영업 수익	(목)수수료 수입
일금			
주소:			
적요: 수질검사수수료 상기 금액을 납입합니다.			
납부자:			
년 월 일			
용인시금고 용인시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 12. 17>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우편번호)/(주소:)/(전화:)/(전송:)/(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년 월 일
 받 음: 보낸: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
 제 목: 시험성적서 교부

「용인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교부합니다.

가. 시료 내용

시 료 명		접수일자/접수번호	
의 퇴 자 명			
시료채취장소		시료채취일시	
검사목적(용도)			

나. 수질검사 결과

시험항목	기 준	시험결과	시 험 항 목	기 준	시 험 결 과
판정					

다. 기타(시험성적서 이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 등)

끝.

☐ 본 성적서의 검사결과는 접수된 검사품목에 한하며, 광고 및 선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